## KOSHA GUIDE

C - 08 - 2015

발판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점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가) 점검일시
- 나) 점검범위
- 다) 각 항목별 점검내용
- 라) 점검자 및 확인자 지정
- 마) 이상 여부에 대한 조치 방법
- 바) 기타 필요한 사항
- (2) "(1)"항에 따른 점검결과 설치된 작업발판이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는 근로자가 그 작업발판을 사용하기 전까지 개선하여야 한다.
- (3) 재사용 강재 작업발판 사용 시에는 작업장에 작업발판을 반입하는 시점에 KOSHA GUIDE C-25-2011(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)에 의거 작업발판의 재료 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및 각 재료별 최대적재수량을 비계의 구조에 따라 정한 후 그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5) "작업발판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"을 〈부록 5〉와 같이 정한 후 그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.